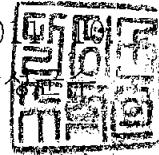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750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  
제출자 : 달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재난관리기금의 적립·운용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 
운용·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“100  
분의 30이상”에서 “100분의 15이상”으로 조정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 
기본법시행령」이 2011. 6. 27.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 
기본법」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30%에서 15%로 하향 조정됨  
(안 제3조)
- 나. 법 조항 변경 및 법령 개정(삭제)에 따른 조례 개정(안 제4조)
- 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재난  
관리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
(안 제6조)
- 라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 
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입법예고 : 2011. 9. 9. ~ 10. 3. - 특기할 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「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」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에 의한 적립금
2.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수입

제2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30”을 “15”로, “당해연도사용 기금액”이라 한다)는 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사용 기금액”이라 한다)는 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지정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지정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64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「예산회계법시행령」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”를 “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 및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”를 “(해당년도사용기 금액의 운용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년도사용기금액”을 “해당년도사용기금액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0조”를 “영 제74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
- 가.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
- 나.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, 장비 등의 사용
- 다.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·보강
- 라.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, 재난대응대비 훈련
- 마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, 주민 지원, 장비 등의 사용
- 바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

6.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
7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나 긴급한 조치

8.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(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 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)

9.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
10. 재난의 원인분석과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
11. 지진가속도 및 급경사지 계측시설

12.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,  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 자치단체는 영  
제74조 제1항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  
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 
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% 이하로  
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 
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

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<p>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 <u>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금융기관이라함은 「예산회계법시행령」 제135조 및 「은행법」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</p>	<p>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 <u>지정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 및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</u></p>
<p>제5조(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  ① <u>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.</u>  ② <u>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  ① <u>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</u>  ② <u>해당년도사용기금액</u></p>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, 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 영 제74조에 따른</p>
<p>1. ~ 4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5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</p> <p>가.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</p> <p>나.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, 장비 등의 사용</p> <p>다.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·보강</p> <p>라.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, 재난대응대비 훈련</p> <p>마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, 주민지원, 장비 등의 사용</p> <p>바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</p> <p>6.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한다) 및 보수·보강</p> <p>7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</p> <p>8.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(긴급구조조직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)</p>
---	--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9.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</u></p> <p><u>10. 재난의 원인분석과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</u></p> <p><u>11. 지진가속도 및 급경사지 계측시설</u></p> <p><u>12.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</u></p> <p><u>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) ① 자차단체는 영 제74조 제1항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%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</u></p> <p><u>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7조(기금의회계관리)이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8조(기금의회계관리)-----</u></p>
---	---

<u>제8조(회계공무원)</u> ① (생 략) 1. ~ 2.(생 략) ② (생 략)	<u>제9조(회계공무원)</u>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<u>제9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u> ① ~ ④ (생 략)	<u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u>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제10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</u>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. 1. ~ 3. (생 략)	<u>제11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</u>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제11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u> ① (생 략) 1. ~ 4. (생 략) ② ~ ③ (생 략)	<u>제12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u>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에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	<u>제13조(시행규칙)</u> ----- ----- -----

## 관계 법령

###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

- 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6.27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  - 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 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  - 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 - 라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 - 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  - 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2.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**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규칙**

제20조 삭제 &lt;2011.6.29&gt;

**지방재정법**

제77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

**국가재정법 시행령**

제46조(유가증권의 관리)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11.15>

1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(외국은행을 제외한다)
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3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4. 삭제 <2009.3.25>

**은행법**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은행업"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은행"이란 은행업을 규칙적·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.

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**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